

#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7
----------	-----

발의일시: 2005. 10. 11.  
발의자: 의회운영위원회

##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제명을 띄워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
  -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리
-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현행 1일에 70,000원 → 100,000원으로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4.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5. 기타 참고자료 : 없음

## 충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월 2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의정활동비 지급)</u>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u>의정활동비</u>를 지급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 .....</p> <p><u>제2조(의정활동비)</u>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u>제3조(회기수당 지급)</u> 의원이 회기중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지 조사활동 등에 참석한 경우에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u>제6조(의정활동비지급기준)</u>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하고,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u>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u>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의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p> <p><u>제8조 (생략)</u></p> <p><u>제9조 (생략)</u></p> <p><u>제10조 (생략)</u></p>	<p><u>제3조(회기수당)</u>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제6조 (현행 제8조와 같음)</u></p> <p><u>제7조 (현행 제9조와 같음)</u></p> <p><u>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30, 2003.12.18, 2005.4.27> [전문개정 1995.7.1]

[별표 6] <개정 2005.8.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100,000원 이내	